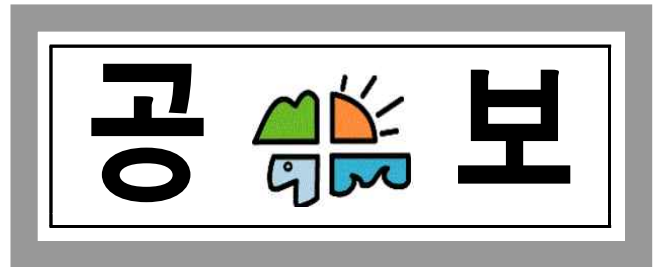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83호 2023년 8월 9일(수)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호선, 소로1-75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입법예고

-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호선, 소로1-75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호선, 소로1-7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8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속초시 금호동 622-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호선, 소로1-75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호선, 소로1-7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무궁화신탁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중로1-1호선	B=20~23m, L=2,021m	B=20~23m, L=120m	
	소로1-75호선	B=10~17m, L=515m	B=10~17m, L=279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구축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중로1-1호선	B=20~23m, L=120m	604㎡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1-75호선	B=10~17m, L=279m	5,21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중로1-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금호동	622-47	대	50	25	-	25	(주)무궁화신탁		
2	금호동	622-455	대	21	21	-	21	(주)무궁화신탁		
3	금호동	산153-17	임	24	24	-	24	(주)무궁화신탁		
4	금호동	622-46	전	47	47	-	47	(주)무궁화신탁		
5	금호동	622-45	잡	27	27	-	27	(주)무궁화신탁		
6	금호동	622-44	대	25	25	-	25	속초시		
7	금호동	622-252	대	33	33	-	33	(주)무궁화신탁		
8	금호동	622-251	대	53	53	-	53	(주)무궁화신탁		
9	금호동	622-146	대	16	16	-	16	(주)무궁화신탁		
10	금호동	624-1	도	4,879	7	-	7	국(국토교통부)		
11	중앙동	622-264	도	31	3	-	3	국(국토교통부)		
12	중앙동	504-2	대	229	107	-	107	(주)무궁화신탁		
13	중앙동	622-25	대	2	2	-	2	(주)무궁화신탁		
14	중앙동	622-242	대	9	9	-	9	(주)무궁화신탁		
15	중앙동	622-241	대	2	2	-	2	(주)무궁화신탁		
16	중앙동	622-240	대	7	7	-	7	(주)무궁화신탁		
17	금호동	622-233	대	2	2	-	2	(주)무궁화신탁		
18	금호동	622-174	대	3	3	-	3	(주)무궁화신탁		
19	금호동	622-243	대	15	15	-	15	(주)무궁화신탁		
20	금호동	622-227	대	24	24	-	24	(주)무궁화신탁		
21	금호동	622-416	대	4	4	-	4	(주)무궁화신탁		
22	금호동	622-35	전	10	10	-	10	(주)무궁화신탁		
23	금호동	622-166	대	38	38	-	38	(주)무궁화신탁		
24	금호동	622-163	대	18	18	-	18	(주)무궁화신탁		
25	금호동	622-312	임	1	1	-	1	(주)무궁화신탁		
26	금호동	622-37	전	1	1	-	1	(주)무궁화신탁		
27	금호동	622-38	전	19	19	-	19	(주)무궁화신탁		
28	금호동	622-311	임	2	2	-	2	(주)무궁화신탁		
29	금호동	622-310	임	3	3	-	3	(주)무궁화신탁		
30	금호동	622-144	대	14	14	-	14	(주)무궁화신탁		
31	금호동	622-143	대	16	16	-	16	(주)무궁화신탁		
32	금호동	622-145	대	3	3	-	3	(주)무궁화신탁		
33	금호동	622-43	대	4	4	-	4	(주)무궁화신탁		
34	금호동	622-388	대	19	19	-	19	(주)무궁화신탁		
계				5,651	604	-	604			

■ 토지조서(소로1-75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중앙동	504-2	대	229	122	-	122	(주)무궁화신탁		
2	중앙동	506-1	도	3,304	2,000	-	2,000	속초시		
3	중앙동	506	체	22,133	870	-	870	속초시		
4	중앙동	505-4	대	3	3	-	3	속초시		
5	중앙동	510-3	대	306	306	-	306	속초시		
6	중앙동	623-24	중	89	89	-	89	(주)무궁화신탁		
7	중앙동	623-59	중	24	24	-	24	속초시		
8	중앙동	623-20	대	56	56	-	56	(주)무궁화신탁		
9	중앙동	623-58	대	1	1	-	1	속초시		
10	중앙동	510-10	대	11	11	-	11	속초시		
11	중앙동	510-11	대	36	36	-	36	(주)무궁화신탁		
12	중앙동	510-18	대	2	2	-	2	속초시		
13	중앙동	510-15	대	1	1	-	1	속초시		
14	중앙동	510-12	대	213	213	-	213	속초시		
15	중앙동	509-10	학	6	6	-	6	속초시		
16	중앙동	623-18	대	1	1	-	1	(주)무궁화신탁		
17	중앙동	623-14	대	27	27	-	27	(주)무궁화신탁		
18	중앙동	509-9	도	1,788	1,009	-	1,009	속초시		
19	중앙동	623-2	대	144	144	-	144	(주)무궁화신탁		
20	중앙동	623-51	대	3	3	-	3	(주)무궁화신탁		
21	중앙동	623-8	대	59	59	-	59	(주)무궁화신탁		
22	중앙동	623-9	대	80	80	-	80	(주)무궁화신탁		
23	중앙동	623-62	대	8	8	-	8	속초시		
24	중앙동	623-60	대	49	49	-	49	속초시		
25	중앙동	623-5	대	163	99	-	99	속초시		
계				28,736	5,219	-	5,219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검

토를 위한 지역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원 조정 : 재난관련업무 부서장 및 소관업무별 재난관련 담당관·과·소장 포함 명시 (안 제3조)

다.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 등 위원이 교체된 경우 통보의무조항 신설 (안 제3조)

라. 위원회 간사 수정 : 재난관리업무 총괄담당 팀장 (안 제3조)

마.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에 대한 임기조항 삭제 (안 제4조)

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항을 위원의 임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안 제5조)

사.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6조)

아. 위원회 개최방법,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병합 (안 제6조)

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수정 :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안 제7조)

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실무위원회 구성원 근거조항 신설 : 지역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안 제7조)

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통보조항 신설 : 지역축제 담당 부서 또는 행사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대응과 (재난 대응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480, FAX 033-639-2588
- 3) 전자문서 : zh041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재난대응과 재난대응팀(033-639-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속초경찰서장
2. 속초해양경찰서장
3. 속초소방서장
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
6.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소관 업무별 재난 관련 담당관·과·소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 관련 위원만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지역축제 담당 부서 또는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